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과 위치) 본 연구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하며 성균관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안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문화·예술적 상상력, 감성 및 표현력과 트랜스미디어 기술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와 실질적 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병행을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대내외 경쟁력 고취와 인지도 상승을 도모한다. 문화기술 및 콘텐츠 분야 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연구비를 확보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. 그리고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류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글로 벌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문화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
- 2. 한류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산학연협동연구 활성화
- 3. 산업체 인력 재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의 양성
- 4.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용화
- 5. 저명인사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및 최신기술 교류
- 6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.

- 1. 연구소장
- 2. 운영위원회
- 3. 기획위원회
- 4. 자문위원회

제5조(연구소장) ①연구소장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 은 운영위원회의 발의,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한다.
-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6조(연구원) ①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연구위원 :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.
- 2. 상임연구원 : 연구목적수행을 위하여 상근하는 자로서 연구경력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수석연구원 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부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나. 책임연구원 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조교수급이상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다. 선임연구원 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경력을 갖춘 자
 - 라. 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
- 3. 객원연구원 : 연구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된 자로 한다.
- 4. 연구원보 :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자로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- ②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.
- ③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상임연구원과 연구원보는 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⑤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구원보의 임용(위촉)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- 제7조(설치 및 구성) ①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 -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 가운데서 소장이 위촉한다.
 -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소 규정 및 세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기금의 조성, 배정,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소의 인사에 관한 사항
 - 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9조(회의)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다.
 -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5 장 기획위원회

- 제10조(구성) ①연구소의 활동방향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다.
 -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1조(심의사항)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소의 발전계획과 실행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2조(회의) ①기획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첫 주 금요일에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장이 소집한다.
 - 1.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 - ②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6 장 자문위원회

- 제13조(구성)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위원은 연구소 참여 연구원을 제외한 산학연 전문가로서,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제14조(평가사항)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 - 1.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적합성
 - 2. 연구결과의 기대효과
 - 3. 연구능력 및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
 - 4. 인력양성 목표에의 부합성
 - 5.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
 - 6. 연구방향의 일치성
- 제15조(회의)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-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7 장 재 정

- 제16조(재정) ①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용역수입금,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 - ②연구소의 현금출납업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무처 재무팀에서 관리한다.
 - ③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17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8 장 사업보고 및 감사

제18조(사업계획 및 보고) ①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, 결산잉여금처리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감사) 연구소는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9 장 해 산

제20조(해산) 연구소의 해산은 「부설연구기관설치및운영규정」제5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른다.

제 10 장 보 칙

제21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